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사 립 학 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교원의 성 비위 관련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위원회에서 사건의 경위,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한 관련 전문가 의견서를 참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고,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학급담당교원(담임)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사립학교법」이 개정(법률 제17659호, 2020.12.22. 공포, 2021.6.23. 시행)됨에 따라, 학급담당교원 보직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의 사유와 그 배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징계등 사유가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심리학자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3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. 다만,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으로서 공소장, 혐의자·관련자·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.

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(보직 등 관리의 기준) ① 법 제66조의6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 각 호
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

②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파면·해임: 10년

2. 강등: 9년

3. 정직: 7년

4. 감봉·견책: 5년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

사 건 명		
전문가 인적사항		
소속 및 직위	성 명	연락처

전문가 의견

※ 사건의 경위,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(신체·정신 및 심리 상태) 등을 고려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

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작성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)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 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5조(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징계등 사유가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심리학 자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 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3서 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 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서. 다만, 제27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와 관련해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으 로서 공소장, 혐의자·관련자 · 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 보된 경우는 제외한다.</u> <u>제27조(보직 등 관리의 기준) ①</u> <u>법 제66조의6제1항의 대통령령</u>
<u><신 설></u>	

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 각 호

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 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

②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파면·해임: 10년

2. 강등: 9년

3. 정직: 7년

4. 감봉·견책: 5년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748